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6. 9.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시민의 책무)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 안 제11조(재정지원)중 “제9조 및 제10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1조중 “제9조 및 제10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조치) (생략)	제4조(재정조치) (원안과 같음)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안과 같음)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생략)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원안과 같음)
제8조(협력요청) (생략)	제7조(협력요청) (원안과 같음)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 (생략)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원안과 같음)
제10조(교통지도 등) (생략)	제9조(교통지도 등) (원안과 같음)
제11조(재정지원) .. 제9조 및 제10조.....	제10조(재정지원) .. 제8조 및 제9조.....
1.2.3.(생략)	1.2.3.(원안과 같음)
제12조(준용) (생략)	제11조(준용) (원안과 같음)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도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캠페인 등 교통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조치) 시장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미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요청)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 보도 등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交通安全 및 교통 캠페인
2.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
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